

2025년도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697
----------	------

2025. 6. 16.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5,113	15,108	5	0.0
일반회계	11,509	11,504	5	0.0
경상적세외수입	7,670	7,670	-	-
임시적세외수입	2,931	2,918	13	0.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66	366	-	-
지난연도 수입	3	3	-	-
국고보조금등	534	534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	13	△8	△61.1
균형발전특별회계	3,604	3,604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04	3,604	-	-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84,338	179,437	4,901	2.7
행정운영경비	1,371	1,371	-	-
재무활동	14	1	13	2,100.5
사업비	182,954	178,066	4,888	2.7

일반회계	171,649	166,748	4,901	2.9
행정운영경비	1,371	1,371	-	-
재무활동	13	1	12	1991.6
사업비	170,265	165,377	4,888	3.0
도시개발특별회계	9,085	9,085	-	-
사업비	9,085	9,085	-	-
균형발전특별회계	3,605	3,604	1	0.0
재무활동	1	-	1	순증
사업비	3,604	3,604	-	-

II.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가. 세입예산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입목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데이터센터)	불용품매각대금	○ 2024년 향온향습기 교체사업으로 발생한 폐지재 매각대금 편성	13	-	13	순증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24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조정	5	13	△8	△61.1
세입예산 추경요구액					5	0.0

나. 세출예산 사업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디지털정책과)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운영	○ 챗봇2.0 구축 (1,250백만원) ○ 신기술 이용료 지원 확대 (101백만원) ○ AI 인프라 구축 (517백만원)	2,315	447	1,868	418.0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서울시재단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재단 개편(190백만원) ○서울 시 전환 플랫폼 구축(302백만원) ○약자동행 시민 시에이전트 개발(296백만원) ○글로벌 시연구소 운영(1,901백만원) ○시 경진대회(200백만원) 	13,747	10,857	2,889	26.6
일반회계 <정보통신과>	서울시 CCTV 안전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접속 및 열람권한 강화(130백만원) 	6,484	6,354	130	2.0
일반회계 <데이터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3	1	12	1991.6
균형발전특별회계 <디지털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회계연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687천원) 	1	-	1	순증
세출예산 추경요구액					4,901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은정)

가. 총괄

- 디지털도시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¹⁾의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5백만원 증액된 151억 1천3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1백만원이(2.7%) 증액된 1,843억 3천 8백만원임.

1)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지(목적 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예측불가능성), ▶예비비 등 다른 수단의 사용은 곤란한지(보충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출처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30, 국회예산정책처.)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5,113	15,108	5	0.0
일반회계	11,509	11,504	5	0.0
균형발전특별회계	3,604	3,604	-	-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1,667억 4천8백만원) 대비 2.9%(49억 1백만원) 증액된 1,716억 4천9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기정예산(36억 4백만원) 대비 소폭(1백만원) 증액된 36억 5백만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변동 없음.

<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84,338	179,437	4,901	2.7
일반회계	171,649	166,748	4,901	2.9
도시개발특별회계	9,085	9,085	-	-
균형발전특별회계	3,605	3,604	1	0.0

나. 세입예산

- 세입예산 증액분 5백만원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불용품매각대금 수입 1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정보격차해소’ 사업의 2024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 추계보다 △8백만원이 감소한 것임.
- ‘데이터센터 불용품매각대금 수입’은 내구연한이 도래(‘12~‘14 구입)한 향온향습기 5대를 교체(2024년)하여 발생한 폐자재에 대한 처분 수입으로, 교체와 매각 공고 시점²⁾을 살펴봤을때 당초 본예산에 세입추계

2) 해당 향온향습기 5대는 2023년(1대)과 2024년(4대)에 교체 완료되어, 불용품 매각이 2024년도에

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예측가능한 세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정보화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당초 추계치(1천3백만원)와 ‘24회계연도 결산 결과(5백만원) 간 차액 8백만원을 감추경 하는 것임.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데이터센터>	불용품매각대금	향온항습기 교체 후 매각	13	-	13	순증
일반회계 <데이터센터>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국비 집행잔액	5	13	△8	△61.1%
세입예산 추경요구액					5	

다. 세출예산

□ 총괄

- 세출예산은 총 49억 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3건에서 각각 18억 6천8백만원(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운영)과 28억 8천9백만원(서울AI재단 출연), 1억 3천만원(서울시 CCTV안전센터 운영)을 증액하였음³⁾.
- 이번 디지털도시국 소관 증액사업 중 AI 분야와 관련된 추경요구액 비율은 99.7%(49억 1백만원 중 48억 8천8백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발표⁴⁾한 AI 7대 전략(붙임1)과 주요 추진 방향⁵⁾에 대한

예정되어 있었으며, ‘25년 1월 매각 공고 계획을 수립하고 2월 공고를 시행하였음.

3) 그 외 2개 사업(‘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이 발생함에 따라 반환금(재무활동) 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4) 오세훈,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 만들 것”...AI 중심의 산업 육성 ‘속도전’, 서울시 보도자료(2025.2.11.)

5) “2025 서울시 인공지능(AI) 행정 추진 계획”(디지털정책과-2823,2025.3.7.)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

-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운영(사업별설명서 863p, 예산서 253p)은 생성형 AI 기반의 내부 업무포털(서우리주무관)과 대시민 챗봇(서울톡)을 확대·구축 하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GPU)를 구매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4억 4천7백만원) 대비 418.0% 증액(18억 6천8백만원)한 23억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315	(x-) 447	(x-) 1,868
사무관리비	(x-) 172	(x-) 71	(x-) 101
공공운영비	(x-) 288	(x-) 288	(x-)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6	(x-) 6	(x-) -
전산개발비	(x-) 1,269	(x-) 81	(x-) 1,188
자산및물품취득비	(x-) 579	(x-) -	(x-) 579

-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의 생성형 AI⁶⁾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용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1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⁷⁾, AI 이용료 지원의 시급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주요 新정보기술 유료 이용(예시) 】

- ▶ 대화형 AI : ChatGPT, Perplexity, Claude, Gemini, Copilot
- ▶ 이미지 생성 AI : Midjourney, Firefly
- ▶ 동영상 생성 AI : Kling, Runway, Sora
- ▶ 기타 AI : Make, Cursor, Papago+, Lbox

6)

- 7) 디지털도시국에서는 2024년부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19조의2(공무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근거하여 이를 지원해왔음.

< 생성형 AI 이용료 지원 실적 >

구분	신청자수(A)	지원자수(B)	지원률(B/A*100)
2024년 상반기 (‘24.3.~7.)	164	56	34.1%
2024년 하반기 (‘24.8.~11.)	206	152	73.8%
2025년 1차 (‘25.2.~5.)	612	190	31.0%

- 한편 이 사업은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개인 계정이 아닌 기업(예시: 챗GPT 비즈니스, 5명 동시접속 가능)계정을 구독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도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전산개발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존 디지털도시국이 운영하는 2종 챗봇(서울톡-대시민용, 서우리주무관-직원용)을 생성형 AI기반으로 구축하기 위한 개발비 11억 8천8백만원과 GPU 구매비(1대) 등 5억 7천9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임8).

▶ 서울톡(대시민용) 관련

- AI를 활용한 대시민용 챗봇의 경우 AI가 익숙해진 시민들로 인해 활용도는 높아지겠지만, 충분히 학습되지 않아 환각현상9) 등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10) 대규모 예산과 시간이 발생하는 바, 이번 추경예산 편성 외에도 철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함.

8) 디지털도시국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대시민 챗봇 ‘서울톡’(‘20.2.오픈)과 직원용 업무 챗봇 ‘서우리 주무관’(‘23.1.오픈)을 운영 중인데(붙임2),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에 따라 결과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 규칙 기반 시스템인 현행 챗봇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고도화된 챗봇을 구축하려는 것임.

9) 실제정보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

10)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 검색증강생성기술로 LLM이 답변 작성시 DB에서 검색결과를 근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각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

- 추가적으로 서울톡 이용자의 질문 유형 분석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서우리주무관(직원용) 관련

- 기존 질의응답 방식을, AI를 활용한 문서 기반 응답 체계로 구축하고 시 내부 업무매뉴얼(265종)을 학습시켜 요약 분석 및 사업계획, 보도자료 등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다만, ‘서우리주무관’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사용량이 저조(일 평균 100명 이하)하다는 사유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는데(3억 3천만원→1억원), 이번 AI 기반 사업은 사용자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여 직원들의 사용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챗봇 관련 2025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변화 >

구분	2025년도 서울시 제출안	2025년도 서울시 본예산 승인	비고
사업기간	2025. 1. 1. ~ 12.31.	변경없음	
사업금액	618,103,000원	285,103,000원	감액 333,000,000원
(2025년)	- 챗봇 ‘서울톡’ 284,907,000원 - 직원용업무챗봇 333,196,000원	- 챗봇 ‘서울톡’ 184,907,000원 - 직원용업무챗봇 100,196,000원	

▶ GPU 구매 관련

- 서울시 각 부서에 필요한 AI 서비스 발굴 및 구축을 위해 GPU 서버 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¹¹⁾,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먼저 GPU 1대를 구매하여 업무용 챗봇인 ‘서우리 주무관’ 고도화를 위한 딥러닝과 업무매

11) 생성형 AI 기반 챗봇 2.0 시스템 및 AI 인프라 구축 계획_디지털정책과-3516, 2025.3.21.

뉴얼 및 AI 문서작성 서비스를 추진하려는 것임.

-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의 정책 기조를 감안했을 때, AI 기반에 대한 투자는 정부 및 타지자체에 비해 적은 규모로 판단되며, 추정으로 GPU를 1대만 구축하게 되면 재난 및 장애를 대비한 이중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내년도 추가 도입이 차질없이 이뤄질 필요가 있겠음.
- 특히 서울특의 경우 GPU 1대로는 동시 접속량 한계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불가¹²⁾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및 지자체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례 비교 >

구분	과기부/NIA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사업명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비	89억원	40억원	(추경) 18억원	131억원
사업기간	210일('25.3.공고)	210일('25.3.공고)	~ '25.12. 예정	333일('25.3.공고)
도입형태	정부공통 기반 구축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업무 시스템	내부LLM구축 (GPU 1대)	내부LLM구축 (GPU 2대)
핵심기능	공통 AI서비스, 인프라 및 보안체계	실시간 AI 협업 환경 조성, 문서작성 자동화	업무매뉴얼, AI 문서작성 등 챗봇 형태 제공	AI문서작성, 회의지원, AI비서 등

- 한편, 디지털도시국은 GPU를 확보하여 AI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 경제실은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GPU 서버 이용 바우처를 지원¹³⁾할 계획이나, 대학 또는 연구소의 지원 계획은 상대적으로 미약한바, 인재 양성과 학계 협력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서울시 GPU 사용 및 지원 강

12) 현재 서울시가 구매하고자 하는 H200모델 1개의 처리량에 따른 동시 사용자 수는 약 50~100명으로 예측되어 이를 통해 무중단 대시민서비스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13) 서울시, 올해 첫 추경… 민생·안전·미래산업 '핀셋투자'로 위기 극복(서울시 보도자료, 2025.5.26.)

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음¹⁴⁾.

- 서울AI재단 출연금(사업별설명서 870p, 예산서 253p)은 28억 8천9백만원으로, 2025년도 기 출연금(108억 5천7백만원) 대비 26.6%의 규모임.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13,747	(x-) 10,857	(x-) 2,889
출연금	(x-) 13,747	(x-) 10,857	(x-) 2,889

- 이는 조례 개정¹⁵⁾과 정책발표¹⁶⁾에 따라 출범한 AI 재단(이하 '재단')의 정원증가와 관련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사업명)	예산(안)	증액사유
인건비	190	인력 증원 등 시재단으로의 개편 비용
사업비	2,699	
글로벌 시연구소 운영	1,901	선진 AI 기술의 국제적 협력 필요성 증대
서울 시플랫폼 구축	302	AI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교류
약자동행 시민 AI에이전트 개발	296	AI기반 디지털 약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AI 경진대회	200	시민 참여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 및 AI 인재 양성
합계	2,889	

- 인건비(1억 9천만원)는 AI 관련 전문인력 총 6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며¹⁷⁾, 재단은 이를 통해 4급 2명, 5급 4명을 충원할 계획임.

14) “PC방용 GPU로 연구하는 한국 대학원… 중국에 뒤지는 건 실력 아닌 인프라” - 한국일보, 2025.02.24.

15) (11-2650)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4.25.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가결(서울디지털재단→서울AI재단)

16) 오세훈,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 만들 것”…AI 중심의 산업 육성 ‘속도전’, 서울시 보도자료 (2025.2.11.)

1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 **글로벌 AI연구소 운영**(19억 1백만원)은 미국 MIT 연구소를 서울에 유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연구인력비(연 15억원)와 연구소 조성·운영비(4억 1백만원)를 편성한 것이나, '25년 SLW 행사(10월)에서 MOU를 체결한 후 연구소는 12월에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연구인력비 지급 시기에 대하여 협의·조정여지가 있음.
 - **AI 경진대회**(2억원)는 청년을 대상으로 AI 기술 트렌드를 활용한 솔루션 개발 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려는 것으로, AI 인재 발굴, 산업분야 진출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겠음.
 - 그러나, 상세내역 중 시상금(1억원)의 경우 올해 추진 예정인 SLW에서 집행될 예정으로 확인되는데, SLW 예산은 이미 일부가 타행사(AI페스타)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¹⁸⁾, 이와 유사 사업인 'AI해커톤' 사업비 5천만원 또한 'AI페스타'를 위해 이미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연도 행사 개최 계획과 예산편성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 **서울시 CCTV 안전센터 운영**(사업별설명서 877p, 예산서 254p)은 CCTV 영상정보에 대하여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경찰, 소방 등)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붙임3), 영상정보 AI 비식별화와 계정관리장

18) 서울AI페스타 2025 운영 사업 결과보고p.21_서울AI재단 제출자료, 2025.4.23.

V 사업비 집행 내역			
□ 총 예산: 금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단위 : 천원)
예산사업명	통계목	당초 계획	집행액
2025 SLW 운영	행사운영비	- CES 등 해외 전시 홍보비용	160,700
2025 AI 활용 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 공공데이터 기반 AI 해커톤(30팀)	49,800
합 계			210,500

화19)를 위해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함²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6,483	(x-) 6,353	(x-) 130
사무관리비	(x-) 20	(x-) 20	(x-) -
공공운영비	(x-) 1,051	(x-) 1,051	(x-) -
전산개발비	(x-) 30	(x-) -	(x-) 30
자치단체자본보조	(x-) 3,300	(x-) 3,300	(x-) -
자산및물품취득비	(x-) 2,081	(x-) 1,981	(x-) 100

- 현재 서울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수집한²¹⁾ CCTV 영상 정보를 범죄 예방, 재난 대응 등 긴급상황 조치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경찰, 소방 등에 제공²²⁾하고 있는데(관계법령 붙임4), 영상 원본을 공개

- 19) 영상정보를 제공한 사용자별, 사용목적별, 기관별 이력 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접속 권한에 따른 계정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임.
- 20) 영상정보 비식별화 및 계정관리 강화(안전망 고도화)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3억 1천5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일부 기능을 우선 도입하고, 기능개선 및 고도화는 '26년도에 이뤄질 예정임.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AI 비식별화 추진계획(정보통신과-4806, 2025.3.17.), '2025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정보시스템과-8928, 2025.4.3.)

세부내용	정보화 예타	추가경정예산안
총 계	315,580천원	130,000천원
비식별화 시스템 (HW+SW 포함)	197,622천원 ■ 비식별화시스템 도입(3식) ■ 비식별화 시스템 고도화	100,000천원(▲97,622천원) ■ 비식별화시스템 도입(2식)
안전망 고도화(연계)	117,958천원 ■ 스마트서울 안전망 연계 ■ 스마트서울 안전망 기능개선 ■ 스마트서울 안전망 고도화	30,000천원(▲87,985천원) ■ 스마트서울 안전망 연계

- 2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2)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

할 경우 긴급상황과 무관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무분별한 열람²³⁾의 우려가 제기되어 비식별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게 됨²⁴⁾.

구분	활용업무	제공근거
경 찰	112긴급출동, 순찰차 영상지원, 수배차량 및 실종자 검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5-10-17호)
소 방	119긴급출동, 소방차 영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15-10-17호)
국 방 부	군 작전통제 및 훈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2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15-10-17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법 무 부	전자발찌 착용 위반자 검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제2015-10-17호)
서울특별시	안심이, 재난상황실, 군중밀집 관제, 풍수해 관리(치수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 이에 서울시는 영상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경우 AI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얼굴 등 개인의 식별가능한 부분을 가리워 긴급상황 시 담당 사용자에게만 영상 원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 다만, 경찰, 소방 등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기관일 경우 과도한 정보 제한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공기관 별 비식별화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겠음.

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3) “수방사·특전사 계엄 전후 서울시 CCTV 7백여 회 열람…군 ‘작전 상황 확인’”-MBC, 2025.1.17.
 “군, 계엄 때 서울시 CCTV 대거 열람…개인정보 무방비”-YTN, 2025.2.19.
- 24)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AI 비식별화 추진계획_정보통신과-4806, 2025.3.17.

- 한편, 본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된 후부터 유지관리비로 매년 연간 약 1천 4백만원²⁵⁾이 소요될 예정임.

- “국고보조금 반환”(2건)은 ‘2024년도 정보격차해소’ 사업(데이터센터)과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디지털정책과)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환하려는 것으로 총 1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데이터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완료 다음연도내 반납 - ‘24 정보격차해소 사업	13	1	12	2006.0%
균형발전특별회계 (디지털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완료 다음연도내 반납 - ‘24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1	-	1	순증
계					13	

* ‘24 정보격차해소 사업 기정예산 1백만원은 기획재정부 공문(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541, 2024.6.18.)에 따른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미징수분(보조금관리시스템 교체에 따른 누락분)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년도 국고보조사업 전체(전국)에 대해 반납하는 것임.

-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국·시비 매칭비율 50 : 50)사업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4년 사업결과 집행잔액과 이자 1천 3백만원²⁶⁾을 반납하는 것임.

25) 연간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도입 후 무상기간(1년)이 종료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SW대가산정 기준에 따른 요율(관리등급 3등급 기준 HW-7.5%, 상용SW-14.5%, 응용SW-12.5%)을 적용하여 관리함.

(단위:천원)

구 분	구입단가	수량	구입가	유지보수비 (연간)
계		2	130,000	14,250
비식별화 시스템 (HW+SW 포함)	100,000	1	100,000	10,500
안전망 고도화(연계)	30,000	1	30,000	3,750

구분	최종예산	실적		집행잔액
		보조기기 보급	정보화교육	
2022년	(x491,578) 983,155	520대	6,115명	(x18,571) 36,290
2023년	(x716,251) 1,432,502	829대	6,434명	(x6,719) 13,437
2024년	(x635,186) 1,270,372	840대	5,416명	(x4,924) 9,848

-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소외지역에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여 기초지자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36억 1천8백만원)으로, ‘24년도에 추진한 3개 자치구²⁷⁾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서울시가 자치구로 재교부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1백만원)을 반환하기 위함임²⁸⁾.

3) 종합의견

- 금번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AI 분야 관련 사업의 증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9억 1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최근 국내외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경쟁 심화 속에서 서울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운영’의 경우 공공의 신뢰 저하를

26) 집행잔액은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 후 남은 잔액과 교육 후 남은 국비 5백만원을 서울시가 반납받아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는 것이며, 이자 8백만원은 사업추진 전에 국비를 교부받은 시점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와 교육기관 재교부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임.

27) 동대문구 - 취약계층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보급 사업,
구로구 - 외국인,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통합안전 스마트폴’, ‘스마트알림이’ 등 설치 사업,
관악구 - 스마트 헬스케어, 여가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

28)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자치구 집행잔액(1억 8천1백만원, 사고이월 6억 7천3백만원 제외),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보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자치구(간접보조사업자)에서 직접 국비로 반납이 가능하여 그 절차를 따르고 있음.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또한, '서울AI재단 출연금' 중 '글로벌 AI연구소 운영'은 연구소 개소 예정 시기를 고려하여 연구인력비 지급 시기에 대한 조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재단은 'AI페스타' 등 행사의 경우 철저한 사전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김태훈	02-2180-8203

[붙임1] 글로벌 AI 혁신 선도 도시 서울 추진 방향 (p.17)

[붙임2] 서울시 챗봇(서울톡·서우리주무관) 개요 및 이용실적 (p.19)

[붙임3] 영상정보 제공현황 및 AI 비식별화 구성도 (p.20)

[붙임4] 영상정보 제공 관계법령 (p.21)

□ 추진 과제별 주관 부서

전략과제	추진사업	주관 부서
인재 양성	초급·중급·고급인재 1만 명 양성	
	1) 청년 취업사관학교 AI 인재 양성	일 자 리 정 책 과
	2) 대학 역량을 활용한 AI 기술 인재 육성 강화	대 학 협 력 과
	3) 산학협력 융복합 교육을 통한 AI 최고 수준 인재 양성	첨 단 산 업 과
	4) AI 서울테크 장학금 신설·추진	교 육 지 원 정 책 과
인프라 조성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 인프라 10배 확대	
	1)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	첨 단 산 업 과
	2) AI 컴퓨팅 인프라(GPU 등) 바우처 지원	첨 단 산 업 과
투자 확대	서울 Vision 2030 펀드 인공지능 대전환 신설(5천억원)	창 업 정 책 과
산업간 융복합	1) AI와 첨단산업 거점과의 융복합 연계 추진	
	① AI+바이오	첨 단 산 업 과
	② AI+핀테크	금 용 투 자 과
	③ AI+로봇	경 제 정 책 과
	2) AI와 전략산업과의 융복합	
	① 제조 산업 분야	첨 단 산 업 과
	② 뷰티·패션테크 분야	뷰 티 패 션 산 업 과
	3) 서울형 R&D 지원(AI, AI+X 분야)	경 제 정 책 과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유치	첨 단 산 업 과 디 지 털 정 책 과 (서울디지털재단)
시민 확산	AI로 도시의 일상을 변화, 글로벌 AI 행사 개최	
	① 서울스마트라이프워크(SLW) 개최	디 지 털 정 책 과
	② 서울 AI 페스타 개최	디 지 털 정 책 과
행정 혁신	AI 행정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디 지 털 정 책 과 (서울디지털재단)

□ **대시민 챗봇 ‘서울톡’**

- 카카오톡 기반, 시정에 대한 각종 문의에 챗봇이 24시간 자동 답변
 - 시정정보 상담안내 및 대시민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지능형 챗봇
- 운영현황 ('20.2.1. 오픈)
 - 접속방법 : 카카오톡 채널 ‘서울톡’ 추가후 즉시 이용
 - 이용방법 : ①채팅창에서 직접 질의어 입력 ②제공되는 메뉴에서 선택
- 제공범위 : ①**120상담**(행정정보, 민원신청), ②**업무처리**(공공예약, 온라인학습 등)
 - ③**알림톡 발송**(민원 신청, 청년수당, 미세먼지, 장애인버스요금 신청 등)
- 이용실적 : ('24년) 120상담건수중 챗봇 비중 18%, 답변율 99%

구분	가입자수	이용자수	대화건수	현장민원접수	알림톡 발송
이용실적 ('24.1.~ 12.)	485,785명 (누적)	321,536명 (월평균 26,795명)	1,233,772건 (월평균 102,814건)	277,465건 (월평균 23,122건)	27,630,233건

- AI 학습 : 매주 미답변내역 분석 → 트레이닝 및 AI 학습으로 답변율 향상

□ **직원용 업무 챗봇(서우리 주무관)**

- 직원들이 자주 문의하는 업무에 대하여 채팅을 통해 자동 답변해주는 챗봇
 - 디지털 가상직원 ‘서우리 주무관’을 챗봇 캐릭터로 설정, 업무답변 역할
- 운영현황 ('23.1.11. 오픈)
 - 이용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직원 (* 21,600명)**
 - 접속방법 : 행정포털 또는 직원용 메신저에서 ‘서우리주무관’ 버튼 클릭
- 주요역할
 - ①**행정업무 보조** : 인사급여, 재무회계, 감사·민원 등 351종 질의·응답
 - ②**AI 업무자동화** : 교육·복지 등 직원 대상 신청업무(수작업)을 대신 자동 처리
- 이용실적 : 전년 대비 62% 증가

구분	이용자수	대화건수	답변율	신청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실적 ('24.1.~ 12.)	17,479명	61,832건 (월평균 5,153건)	91% (평균)	총 18종 / 직원 2,802명 이용 담당자 : 평균 11.5시간 절감 ('24년 만족도 조사결과)

- AI 학습 : 매주 미답변내역 분석 → 트레이닝 및 AI 학습으로 답변율 향상

붙임3

영상정보 제공현황 및 AI 비식별화 구성도

*출처: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AI 비식별화 추진계획(정보통신과-4806, 2025.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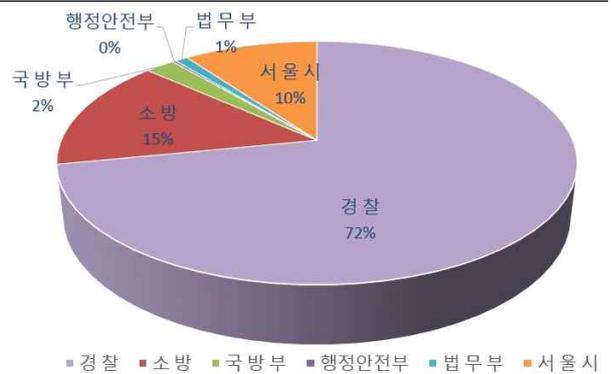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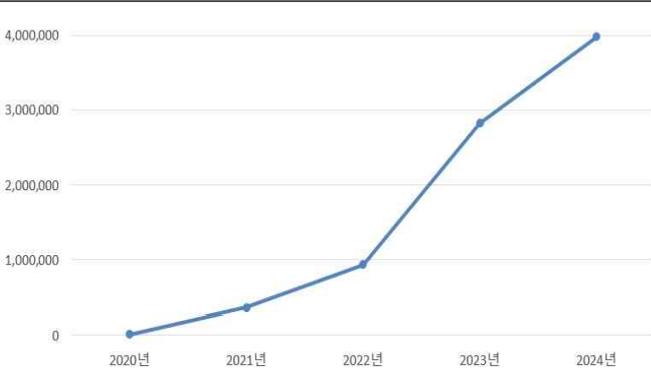
□ 센터 운영현황

○ 영상정보 연계 대상(스마트서울 안전망)

- 경찰, 소방,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서울시 CCTV관련 업무부서

○ 영상정보 제공현황

구분	합계	2020년(10-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2월)
건수	8,699,931	17,231	363,957	935,485	2,829,983	3,986,301	566,974
경찰	5,738,445	14,565	248,381	525,992	1,862,420	2,684,590	402,497
소방	1,181,655	0	47,236	224,752	181,555	621,288	106,824
국방부	177,137	0	6,819	32,028	59,201	78,408	681
행정안전부	19,324	0	0	1,258	8,765	9,283	18
법무부	75,991	634	385	3,881	15,258	45,463	10,370
서울시	794,274	0	7,399	56,323	416,772	267,196	46,584



□ 구성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

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4.>

1. 삭제 <2023. 3. 14.>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삭제 <2023. 3. 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의 예방·대비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14., 2023. 12. 26.>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 명세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 접속 정보의 제공을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7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5. 16.>

⑨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제7항에 따른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6.>

⑩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해당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본조신설 2019. 12. 3.]